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3051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30514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8가단13242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항소인 E

변론 종결 2021. 12. 8.

판결 선고 2022. 1. 12.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8가단132421(잔부판결)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702,1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702,1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인 150,497,566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140,984,63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40,282,459원을 공제한 100,702,171원(= 140,984,630원 - 40,282,4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위 100,702,1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비용을 들여 취득한 피고의 재산이나 그 명의를 B 앞으로 해 두었던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 내지 공동담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래 피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환원시키기 위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반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반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52075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등 판결).

나. 이 사건 매매의 사해행위 여부

1) 앞서 든 증거, 을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2008년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가 그 취득대가의 전부 내지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할 것이고, 그 취득대가를 부담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당시 사실혼관계였던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K 소유였는데, 2008. 2. 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1), L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해 11. 24. 피고 지분에 관하여 B 앞으로, L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1. 8. 26. 피고 지분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되었다.

② 2008. 2. 1. 피고, L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매매대금은 9,200만 원이었다.

피고는 매도인인 K에게 매매대금 중 1,900만 원은 계좌이체하고(K의 요청에 따라 일부를 M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계좌(H조합(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8. 1. 23. K, M 계좌로 각 200만 원, 500만 원, 같은 달 30. M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31. K 계좌로 1,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피고는 2008. 2. 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H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6,300만 원을 피고 계좌(H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대체하고 그 계좌에서 현금 6,4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당일 위 금원 상당이 K 계좌로 무통장 입금되었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 대출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6,400만 원을 K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나머지 매매대금 9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나, 적어도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H조합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2014. 7. 15. 그 근저당권이 해지되고 채무자를 B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B이 아닌 피고가 2016. 3. 7. H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의 원리금 40,144,590원을 변제하고 그에 관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④ 피고와 B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가 B과 사이에서 2009년, 2011년 자녀 2명을 출산하기도 하였는데 2016년경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7. 1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등기원인을 '2017. 9. 30.자 매매'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수 등은 없었다. K로부터 2008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등기 명의를 피고 등 앞으로 하였다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B과의 합의에 기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본래 명의수탁자의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B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를 들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런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백정현

판사허이훈

판사김민지

별지

1) 피고는 2010. 1. 8. 'N'에서 현재와 같이 'E'으로 개명하였고, B도 같은 날 'O'에서 'B'으로 개명하였는데, 개명 전후 모두 피고, B으로 표시한다.